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 금산법 개정안 입법예고

- 이번 개정안은 현행 금산법(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)의 목적 조항인 합병·전환, 적기시정조치 등 금융기관 정리·구조개선에서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안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.
  -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속히 매입·정리하여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자산관리공사내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
  - 현재 주요국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정리 및 자본확충을 위해 선제적인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·운영 중이며, 우리 정부도 금융안정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  -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 및 총 40조원 규모의 기금채권 보증동의안을 금번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.
  
- 자금지원 대상으로는 현행 금산법상의 금융기관(은행,보험,저축은행,증권,지주사 등)을 대상으로 하며, 필요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출연 및 대출도 가능
  - 자금지원 요건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, 유동성 검색 등으로 원활하지 않아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
  - 지원방식으로는 출자, 대출, 채무보증 등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포괄하며, 금융기관이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, 공사 운영 위원회에서 자금지원 여부를 심사·의결, 공사의 자금지원 등의 절차를 거침.
  
-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은 금감원이 해당 금융기관의 계획을 제출 받아 점검하고, 금융위가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

(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,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, 3/17)